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 시 보

www.namwon.go.kr

<b>선 람</b>	기관의 장

제 65 호                      2015. 7. 3(금)

## 조    례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

## 공    고

○도로지정 공고.....8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9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7월 3일

남원시 조례 제 1176 호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를 남원  
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 의원 등의” 를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  
로 한다.

제2조(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남원시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특별  
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남원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준)의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2. 축의·부의금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10.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10호 관련)

##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구호적·자선적 행위

##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물 제공

나. 다른 지방의회·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홍보에 필요한 소식지·명함·명패 등의 제작

##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가. 해당 지방의회가 개최한 집회(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

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 해당 지방의회,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직무와 관련된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행사 또는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구입, 현수막의 제작 및 임차료의 지급

마. 해당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바.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사.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의회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아. 다른 지방의회,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의회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해당 지방의회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6. 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상근직원(의회사무처·국·과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나. 해당 지방의회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지방의원에게 대한 격려품 지급

- 다.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 포함)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라.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 마.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
- 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청사방호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사.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취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및 식사 제공
-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 나. 축의·부의금품(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 한정한다)
  -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 2) 지급 대상자: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9.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 의원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남원시의회-----</p> <p>-----</p> <p>-----</p> <p>-----</p> <p>-----</p> <p>-----</p> <p>-----</p> <p>-----</p> <p>-----</p>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업무추진비”라 함은 남원시의회 의원 등이 사용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p> <p>2. “의원”등이라 함은 의장,부의장,특별위원장,사무국장,전문위원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남원시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남원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p>
<p>제3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한다.</p> <p>1.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u>절대성경비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u></p>	<p>제3조(집행기준) -----</p> <p>-----</p> <p>-----</p> <p>-----</p> <p>-----</p> <p>1. ----- <u>신용카드</u>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p>

2. 현금지출은 격려금, 축의금, 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

3. ~ 9. (생략)

10. (신설)

2. 조의금·축의금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3. ~ 9. (현행과 같음)

10.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 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남원시 공고 제 2015 - 847호

##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15-9	남원시 신촌동 322-4(답)	노동열	2015-건축과- 신축신고-204	183	3~5	873	남 원 시 신 촌 동 439, 322-2 산 44	873	국(농림축산식품부) 야 종 박* 태 황* 옥 노* 열 오* 근 야* 옥

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5 - 857호

#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07월 03일

# 남 원 시 장

- 1. 서 류 의 명 칭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 2. 공 고 기 간 : 2015. 07. 03. ~ 2015. 07. 17
-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한 공매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063-620-6288) ●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성명	주소	사유	자동차	비고
(주)뉴*림	서울시 강남구	이사감	23*6885	